

제도단일화관련
매매제도(안) 설명서

2007. 3. 26

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본부
(선물제도총괄)

« 목 차 »

1. 시장의 구분	1
2. 매매거래시간	2
3. 상품 기본 Spec	3
4. 선물스프레드 거래	6
5. 호가의 유형 및 조건	10
6. 호가의 방법 등	13
7. 호가접수시간	15
8. 호가의 정정 및 취소	16
9. 호가의 가격제한	17
10. 호가의 수량제한	19
11. 매매체결방법	20
12. 협의대량거래	22
13. 거래의 중단	23
14. 착오거래의 정정	24
15. 시세 등의 공표방법	25
16.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	26
17. 유동성 관리상품 및 상장폐지예고상품의 지정	31
18. 이론가격	34

1	시장의 구분(규정 §3)	변경사항	유의사항
		-	▶ 3년국채선물옵션

- 주식상품시장, 금리상품시장, 통화상품시장, 일반상품시장 및 선물스프레드 시장 등 5개 시장으로 구분

시장	상품	
주식상품시장	선물	코스피200 선물시장, 스타지수선물시장, 주식 선물시장(예정)
	옵션	코스피200 옵션시장, 주식옵션시장
금리상품시장	선물	3년국채 선물시장, 5년국채 선물시장, 통안증권 선물시장, CD 선물시장
	옵션	3년국채 선물옵션시장 (호가접수 제한 처리)
통화상품시장	선물	미국달러 선물시장, 일본엔 선물시장, 유럽연합유로 선물시장
	옵션	미국달러 옵션시장
일반상품시장	선물	금 선물시장, 돈육 선물시장(예정)
선물스프레드 시장	주식 상품	코스피200 선물스프레드시장, 스타지수 선물스프레드시장
	금리 상품	3년국채 선물스프레드시장, 5년국채 선물스프레드시장, 통안증권 선물스프레드시장, CD 선물스프레드시장
	통화 상품	미국달러 선물스프레드시장, 일본엔 선물스프레드시장, 유럽연합유로 선물스프레드시장
	일반 상품	금 선물스프레드시장

주) 복합주문(combination order)은 선물스프레드 거래로 수용

2	매매거래시간 (규정 §4)	변경사항 ▶ 평일 : 금리·통화·일반상품 15분연장	유의사항 -
---	---------------------------------	---	------------------

평일(모든 상품)

- 09:00 - 15:15

* 금리·통화·일반상품의 경우 기준보다 15분 연장

최종거래일

- 상품별 특성 및 장 종료후 업무처리시간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적용

상품	매매거래시간	비고
주식관련 상품 (코스피 200 선물/옵션, 스타지수, 주식옵션)	09:00 - 14:50	현행과 동일
금리상품, 통화상품시장, 금선물시장	09:00 - 11:30	현행과 동일

* 선물스프레드시장의 경우 2개 종목 중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
이 있는 경우에 그 종목의 매매거래시간

- 최종결제일 현금결제상품(주식·금리상품)은 접속매매로, 실물인수
도상품(통화·일반상품)은 단일가매매로 장종료

3	상품 기본 Spec	변경사항	유의사항
		▶ 최종거래일·최종결제일 (금리·통화·일반상품) ▶ 금리·통화·일반상품의 호가한 도가격 → 증거금률 수준	-

□ 주가지수 · 주식 상품의 기본 스펙(제도)

항목	주식상품				선물스프레드 (지수선물)
	코스피200선물	스타지수선물	코스피200옵션	주식옵션	
거래대상	코스피 200 지수	스타지수	코스피200 지수	주식시장 상장주권(30개)	선물 결제월간 가격차
거래단위	코스피200지수 × 50만원	스타지수 ×1만원	코스피200지수 × 10만원	기초주권가격 × 10	선물 결제월간 가격차 × 50만원.or.1만원
결제월	3, 6, 9, 12월	3, 6, 9, 12월	연속 3개월 및 3, 6, 9, 12월	연속 3개월 및 3, 6, 9, 12월	최근월물과 원월물(3개)간 가격차
1계약의 금액	가격×거래승 수(50만)	가격×거래승 수(1만)	가격×거래승 수(10만)	가격×거래승수(10)	-
상장결제월	4개 결제월	4개 결제월	4개 결제월	4개 결제월	3개 결제월
호가한도가격	기준가격±10%	기준가격±10 %	15%상승(하락) 옵션이론가격	15%상승(하락) 옵션이론가격	원월물 상(하)한가 - 최근월물 하(상)한가
호가가격단위	0.05	0.50	3P미만(0.01), 3P이상(0.05)	1천원미만(10원), 2천원미만(20원), 5천원미만(50원), 1만원미만(100원), 1만원이상(200원)	코스피200(0.05), 스타(0.50)
최종거래일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 다음 거래일				최종거래일 다음 거래일
최종결제방법	현금결제		현금결제		현금결제

□ 국채 · 금리 · 통화 · 일반 상품의 기본 스펙(제도)

항목	금리상품			
	3년국채선물	5년국채선물	CD선물	통안증권선물
거래대상	표면금리 8%, 6개월 단위 이자지급 방식의 3년만기 국고채권	표면금리 8%, 6개월 단위 이자지급 방식의 5년만기 국고채권	만기 91일의 양도성 예금증서	만기 364일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거래단위	액면 1억원	액면 1억원	액면 5억원	액면 2억원
1계약의 금액	가격×거래승수 (100만)	가격×거래승수 (100만)	거래단위-(100-가격) ×거래승수(125만)	가격×거래승수 (200만)
결제월	3, 6, 9, 12월	3, 6, 9, 12월	3, 6, 9, 12월	3, 6, 9, 12월
상장결제월	2개 결제월	2개 결제월	4개 결제월	4개 결제월
호가한도가격	기준가격±1.5%	기준가격±1.8%	기준가격±0.3%	기준가격±0.3%
호가가격단위	0.01			
최종거래일	결제월의 세 번째 화요일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 다음 거래일			
최종결제방법	현금결제			

항목	통화상품				일반상품
	미국달러선물	미국달러옵션	엔선물	유로선물	금선물
거래대상	미국달러	미국달러	일본엔	유럽연합유로	순도 99.99% 금괴
거래단위	USD 5만	USD 1만	¥ 5백만	EUR 5만	1Kg
결제월	연속 3개월 및 3, 6, 9, 12월	연속 3개월 및 3, 6, 9, 12월	연속 3개월 및 3, 6, 9, 12월	연속 3개월 및 3, 6, 9, 12월	연속 2개월 및 2, 4, 6, 8, 10, 12월
1계약의 금액	가격×거래승수 (5만)	가격×거래승수 (1만)	가격×거래승수 (5만)	가격×거래승수 (5만)	가격×거래승수 (1천)
상장결제월	6개 결제월	4개 결제월	6개 결제월	6개 결제월	7개 결제월
호가한도가격	기준가격±3%	3%상승(하락) 옵션이론가격	기준가격±3.75 %	기준가격±3.75 %	기준가격±9%
호가가격단위	0.10				10
최종거래일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T)				결제월 마지막 거래일의 직전 2거래일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로부터 기산하여 3 일째 거래일(T + 2)				결제월의 마지막 거래일
최종결제방법	실물인수도				

* 금리상품, 통화상품 및 일반상품(금선물)도 주식상품과 동일하게 최종거래일을 기준으로 최종결제일을 정함

□ 옵션의 권리행사 유형 및 옵션의 권리행사가격 범위 · 수 : 현행 유지

- 권리행사의 유형 : 결제월의 최종거래일에만 행사할 수 있는 유럽형

- 권리행사가격의 범위(간격)와 수

구분	상품	간격		권리행사가격의 수	
		연속월	분기월	연속월	분기월
지수	KOSPI200옵션	2.5P	5P	ATM±6	ATM±3
개별 주식	개별주식옵션	*		ATM±4	
통화	미국달러옵션(규§120)		10원		ATM±3

* 개별주식옵션의 권리행사간격

권리행사가격	간격
5,000원 미만	100원
5,000원 ~ 10,000원 미만	200원
10,000원 ~ 20,000원 미만	500원
20,000원 ~ 50,000원 미만	1,000원
50,000원 ~ 100,000원 미만	2,000원
100,000원 ~ 200,000원 미만	5,000원
200,000원 ~ 500,000원 미만	10,000원
500,000원 ~ 1,000,000원 미만	20,000원
1,000,000원 이상	50,000원

- ※ 금리상품, 통화상품, 일반상품의 선물스프레드는 대상선물의 결제월 간 가격차이를 이용한 선물거래로서 호가가격단위 및 거래승수 등은 대상선물거래의 경우와 동일

4	선물스프레드거래 (규정 §61)	변경사항	유의사항
		▶ 금리, 통화, 일반상품(신설) ▶ 충족조건 추가 가능	▶ 금리상품의 선물스프레드의 가격(타 상품과 역) ▶ 최종거래일 거래시간(통화, 일반상품:종가개시전까지) ▶ 근월물 의제약정가격(금리상품)

□ 선물스프레드종목

- 2개 결제월 종목 : 3년국채선물 및 5년 국채선물
 - 제1Spread : 최근월종목 + 차근월종목
 - 4개 결제월 종목 : 코스피200 선물, 스타선물, CD선물, 통안증권선물
 - 제1Spread : 최근월종목 + 차근월종목
 - 제2Spread : 최근월종목 + 차차근월종목
 - 제3Spread : 최근월종목 + 최원월종목
 - 6개 결제월 종목 : 통화선물
 - 제1Spread : 최근월종목 + 차근월종목
 - 제2Spread : 최근월종목 + 차차근월종목
 - 제3Spread : 최근월종목 + 차차차근월종목
 - 제4Spread : 최근월종목 + 차차차차근월종목
 - 제5Spread : 최근월종목 + 최원월종목
 - 7개 결제월 종목 : 금선물
 - 제1Spread : 최근월종목 + 차근월종목
 - 제2Spread : 최근월종목 + 차차근월종목
 - 제3Spread : 최근월종목 + 차차차근월종목
 - 제4Spread : 최근월종목 + 차차차차근월종목
 - 제5Spread : 최근월종목 + 차차차차차근월종목
 - 제6Spread : 최근월종목 + 최원월종목
- 호가의 종류 : 지정가만 가능 (전량충족 및 일부충족 조건 가능)
- 호가의 입력제한 : 단일가 호가접수시간에는 호가 입력 제한

□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가격

- 원월물 가격 - 근월물 가격.

다만, 금리상품의 경우 근월물가격 - 원월물가격

<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구성 >

구분	매도 선물스프레드 거래	매수 선물스프레드 거래
주식상품, 통화상품, 일반상품 (금선물)	근월물 매수, 원월물 매도	근월물 매도, 원월물 매수
금리상품	근월물 매도, 원월물 매수	근월물 매수, 원월물 매도

□ 가격표시방법 : 양수, 0, 음수

□ 거래시간 : 대상선물거래의 접속거래시간에만 가능함.

- 평일 : 09:00 - 15:05

- 최종거래일 : 종가 체결방법에 따라 상품별 달리 적용

구분	선물스프레드 매매거래시간	비고
주식상품	09:00 - 14:50	접속으로 시장 종료
금리상품	09:00 - 11:30	접속으로 시장 종료
통화상품, 일반상품(금선물)	09:00 - 11:20	단일가로 시장 종료

주) 최종거래일에 현금결제 상품(주식·금리상품)은 접속 및 실물인수도 상품(통화·일반상품)은 단일가로 각각 장 종료

* 스프레드거래의 경우 매매거래시간과 호가접수시간은 동일

□ 가격제한폭 : 없음 (다만, 호가한도가격 있음)

구분	주식상품, 통화상품, 일반상품(금선물)	금리상품
호가최고한도가격	원월물 상한가 - 근월물 하한가	근월물 상한가 - 원월물 하한가
호가최저한도가격	원월물 하한가 - 근월물 상한가	근월물 하한가 - 원월물 상한가

□ 의제 약정가격

구분	주식상품, 통화상품, 일반상품(금선물)	금리상품
근월물	직전 체결가격. 다만, 직전 체결가격이 없는 경우는 기준가격	
원월물	근월물 가격 + 스프레드 가격	근월물 가격 - 스프레드 가격

*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체결이 용이한 근월물을 기준으로 먼저 의제약정가격을 정한 후에 원월물의 의제약정가격을 정함

- 원월물의 의제약정가격이 상 · 하한가(호가 최고 · 최저 한도가격)를 벗어나는 경우의 원월물과 근월물의 의제약정가격

- 원월물의 의제약정가격

- 원월물의 의제약정가격 > 상한가 : 원월물의 상한가
- 원월물의 의제약정가격 < 하한가 : 원월물의 하한가

- 근월물의 의제약정가격

- 주식·통화·일반상품(금선물)
 - : 원월물의 의제약정가격 - 스프레드거래 가격
- 금리상품 : 원월물의 의제약정가격 + 스프레드거래 가격

< 사례 > 코스피200 선물 : 3월물 및 6월물간 스프레드의 경우

매도	가격(p)	매수
	5	
	4	
갑 : 3계약	3	3계약 : 을
	2	

* 갑 : 스프레드 매도(원월물 매도 + 근월물매수)

을 : 스프레드 매수(원월물 매수 + 근월물매도)



< 갑 : 3월물 및 6월물의 약정수량·가격 >

구분	3월물 및 6월물의 약정수량 · 가격	
	3월물 매수	6월물 매도
약정수량	선물스프레드 체결수량과 동일수량	
	3계약	3계약
약정가격	3월물 직전가격(188.50P)	3월물 직전가격(188.50P) + 선물스프레드가격(3P)
	188.50P	191.50P
체결후 보유포지션 (미결제약정수량)	3월물 매수미결제 3계약	6월물 매도미결제 3계약

※ 을의 경우는 약정수량 및 약정가격은 갑의 경우와 동일하며,
포지션은 3월물 매도 미결제 및 6월물 매수미결제가 각각 3계약임.

5	호가의 유형 및 조건 (규정 §2, §64)	변경사항	유의사항
		▶ 주식상품 : 충족조건 도입 ▶ 금리·통화·일반상품 : 조건부 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선물 스프레드호가 도입 등	▶ 충족조건 호가는 지정가호가에 대해서만 협용

□ 호가의 유형 및 조건의 변경내용

구분		금리·통화·일반상품	주식상품
현행	호가 유형	지정가, 시장가, 복합	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선물스프레드호가
	조건	전량, 충족, 당일	-
변경	호가 유형	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선물스프레드호가	
	조건	전량충족(FOK), 일부충족(FAK, IOC)	

※ 호가 유형은 주식상품으로 통일 및 조건은 금리·통화·일반상품으로 통일

※ 금리·통화·일반상품의 복합주문은 선물스프레드호가로 수용

* 당일조건은 호가의 효력은 당일 중에만 있으므로 삭제

가. 호가의 유형

1) 지정가 호가 : 종목, 가격 및 수량 지정

2) 시장가호가 : 종목 및 수량만 지정하고 가격은 미지정

○ 단일가시 시장가호가의 의제가격

① 매도 및 매수의 시장가호가만 있는 경우

· 매도수량 = 매수수량 : 직전의 약정가격(없는 경우 기준가격)

· 매도수량 > 매수수량 : 직전의 약정가격 - 1 tick

(하한가 또는 호가최저한도가격이 최저치)

· 매도수량 < 매수수량 : 직전의 약정가격 + 1 tick

(상한가 또는 호가최고한도가격이 최고치)

② ① 이외의 경우

- 매도시장가
 $= \min(\text{가장 낮은 매도호가} - 1 \text{ tick}, \text{가장 낮은 매수호가}, \text{직전약정가격})$
*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는 각각 시장가호가 제외한 호가 대상
- 매수시장가
 $= \max(\text{가장 높은 매수호가} + 1 \text{ tick}, \text{가장 높은 매도가}, \text{직전약정가격})$
*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는 각각 시장가호가 제외한 호가 대상

○ 복수가격시 시장가호가의 의제가격

- 매도시장가
 $= \min(\text{가장 낮은 매도호가} - 1 \text{ tick}[\text{매도호가 없는 경우 직전약정가격}], \text{가장 낮은 매수호가})$
*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는 각각 시장가호가 제외한 호가 대상
- 매수시장가
 $= \max(\text{가장 높은 매수호가} + 1 \text{ tick}[\text{매수호가 없는 경우 직전약정가격}], \text{가장 높은 매도가})$
*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는 각각 시장가호가 제외한 호가 대상

3) 조건부지정가

- 장중 미체결잔량이 종가결정시(단일가 매매에 한함) 시장가호가로 전환되는 지정가호가
- 전환·접수되기 전의 조건부지정가호가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래소선물·옵션시스템에 기록
 - ①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
 - ② 가격이 동일한 호가간에는 호가가 접수된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

4) 최유리지정가

- 체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방 최우선호가로 지정되는 호가
 - 매도 최유리지정가 : 가장 높은 매수호가 가격
 - 매수 최유리지정가 : 가장 낮은 매도호가 가격

* 시장가호가와의 차이점

시장가호가의 잔량은 의제가격이 변동하나 최유리지정가는 최초의 의제가격으로 고정

나. 호가의 조건

□ 전량충족조건(FOK[Fill or Kill])

- 호가 제출된 즉시 전량체결이 가능하면 전량 체결시키되 전량체결이 불가능한 경우는 호가수량 전량을 취소하는 조건

□ 일부충족조건(FAK[Fill and Kill], IOC[Immediate or Cancel])

- 호가 제출된 즉시 체결가능한 호가는 체결하고 미체결잔량은 취소하는 조건

* 전량충족조건 및 일부충족조건은 접속거래의 경우 지정가호가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 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에 대해서는 불허

< 호가유형별 조건부여 허용내용 >

단일가매매			접속매매		
주문유형	호가조건		주문유형	주문조건	
	전량충족조건	일부충족조건		전량충족조건	일부충족조건
지정가	X	X	지정가	O	O
시장가	X	X	시장가	X	X
조건부지정가	X	X	조건부지정가	X	X
최유리지정가	X	X	최유리지정가	X	X

* O : 허용, X : 미허용

6	호가의 방법 등 (규정 §64)	변경사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가입력내용 : 주식상품으로 통일(현행 세칙 별표8) ▶ 호가조건제한(최근월외종목, 선물스프레드거래 및 시장조성계좌, 단일가호가시간중) ▶ 호가조건제한: 충족조건은 정가호가에 대해서만 인정 ▶ 호가입력제한(3년국채선물옵션)

가. 호가 방법

- 호가는 회원 선물·옵션시스템 또는 회원 선물·옵션단말기*로 거래소 선물·옵션시스템에 호가의 입력내용을 입력함

* 거래의 호가의 입력 등을 위하여 회원이 당해 회원의 본점·지점 그 밖에 영업소에 설치하는 단말기중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거래소선물·옵션시스템과 연결하는 단말기

□ 호가의 입력내용

- 회원번호, 종목, 수량, 가격, 매도·매수구분, 위탁·자기구분, 호가 유형, 호가의 조건[FOK, IOC], 국적, 투자자, 회원영업소번호, 대용주권계좌, 차익거래· 헤지거래구분, 수탁의 방법,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 등

* 구분코드는 주식상품 기준으로 통일

나. 호가의 입력제한

1) 호가 유형 제한

- 최근월종목(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주의 최초거래일부터 기산하여 당해 종목의 최종거래일까지는 최종거래일이 두번째로 먼저 도래하는 종목 포함)이외의 종목

⇒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

□ 선물스프레드거래 및 시장조성계좌를 통한 거래

⇒ 지정가호가 이외의 호가

□ 단일가호가시간 및 주식옵션 정리매매종목단일가호가시간

⇒ 최유리지정가호가 및 선물스프레드거래의 호가

□ 종가 단일가호가시간

⇒ 조건부지정가호가(다만, 취소호가는 제외)

□ 선물거래별 최근월종목의 거래시간 종료후

⇒ 대상이 동일한 선물스프레드거래의 호가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 중 접속으로 장 종료하는 종목(주식·금리상품)

⇒ 조건부지정가호가

나. 호가 조건 제한

□ 전량(FOK) 및 충족(FAK, IOC)조건은 지정가 호가만 허용

다. 호가 입력 제한

□ 3년 국채 선물옵션의 경우 모든 호가 입력 제한

7	호가접수시간	변경사항	유의사항
		▶ 금리·통화·일반상품 : 30분 연장	▶ 스프레드거래시장 : 접속매매 시간에만 호가접수(따라서 통화상품, 금선물은 최종거래 일 종료10분전까지)

□ 거래개시전 60분부터 거래시간 종료전까지

- 금리, 통화, 일반상품의 경우 기준보다 30분 연장

< 상품별 호가접수시간 >

구분	평일	최종거래일
주식상품시장	08:00 ~ 15:15	08:00 ~ 14:50
금리·통화·일반상품시장(금선물)		08:00 ~ 11:30
스프레드 거래시장	09:00 ~ 15:05	09:00 ~ 14:50
		09:00 ~ 11:30
		09:00 ~ 11:20

주) 최종거래일에 현금결제 상품(주식·금리상품)은 접속 및 실물인수도 상품(통화·일반상품)은 단일가로 각각 장 종료

* 스프레드 거래의 경우 매매거래시간과 호가접수시간은 동일

8	호가의 정정 및 취소 (규정 §68)	변경사항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가호가와 조건부지정가호가간 정정불가(종가단일가호가시간) ▶ 조건있는 호가의 정정 : 조건 있는 지정가호가로의 정정만 허용

□ 가격정정 및 다른 종류로의 호가정정

- 지정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경우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가격으로 변경가능
 - * 최유리지정가호가는 최유리지정가호가로의 정정도 가능
-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경우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 다른 종류의 호가로 변경가능
 - * 최종약정가격 결정을 위한 단일가호가시간에는 시장가호가와 조건부지정가호가간의 정정 불가

□ 호가유형 및 조건간 정정허용 사례

정정호가 원호가	조건 없는 호가				조건 있는 호가			
	지정가	시장가	조건부	최유리	지정가 (F or I)	시장가 (F or I)	조건부 (F or I)	최유리 (F or I)
지정가	O	O	O	O	O	X	X	X
시장가	O	X	O	O	O	X	X	X
조건부	O	O	O	O	O	X	X	X
최유리	O	O	O	O	O	X	X	X

* F : 전량충족조건(FOK), I : 일부충족조건(IOC, FAK)

* O : 허용, X : 미허용

		변경사항	유의사항
9	호가의 가격제한 (규정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통화·일반상품의 매매기준가격 → 주식상품과 동일 ▶ 통화옵션의 호가한도가격→주식상품과 동일 	-

가. 매매기준가격

1) 선물시장

- 거래개시일 : 선물이론가격
- 거래개시일의 다음날부터 최초 거래성립일까지
 - 전일 기세가 있는 경우
 - 전일의 기세, 다만 전일의 기세가 상한가(최고호가한도가격)로서 이론가격보다 낮거나, 하한가(최저호가한도가격)로서 이론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론가격으로 변경
 - 전일 기세가 없는 경우에는 전일 기준가격으로 하되, 이론가격에서 전일기준가격을 뺀 수치의 절대값이 전일기준가격으로 하는 가격제한폭(금리선물, 통화선물, 금선물등의 경우 거래증거금율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선물이론가격으로 변경
 - * 가격변동범위가 거래증거금율 수준과 유사
- 최초 거래성립일의 다음날 이후 : 전일의 정산가격

2) 옵션시장

- 거래개시일 : 이론가격
- 거래개시일의 다음날부터 최초거래성립일까지

- 전일 기세가 있는 경우 : 전일의 기세
- 전일 기세가 없는 경우 : 전일 기준가격
 - 다음의 경우 : 옵션이론가격
 - 전일기준가격 > 기준가격적용최대이론가격*
 - 전일기준가격 < 기준가격적용최소이론가격**

* 기준가격 적용최대이론가격 : A%상승콜옵션이론가격 및 A%하락풋옵션이론가격
 ** 기준가격적용최소이론가격 : A%하락콜옵션이론가격 및 A%상승풋옵션이론가격
 *** A : 거래증거금율의 1/2 수준

- 최초 거래성립일의 다음날 이후 : 전일의 거래증거금기준가격

나. 가격제한폭 및 호가한도가격

1) 선물거래

- 주식상품

- 지수선물 : 기준가격 대비 상·하 10%로 하되,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는 가격중 가장 가까운 가격

- 금리·통화·일반상품

- 가격제한폭은 없음. 다만 주문실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문제한범위만 있으나, 용어 통일상 호가한도가격으로 함

- 미국달러·엔·유로선물 : 기준가격 \pm 100 (10%)
- CD금리선물 : 기준가격 \pm 1.00
- 금선물 : 기준가격 \pm 2,000
- 3년국채선물 : 기준가격 \pm 3.00 (3%)

- 통안증권금리선물 : 기준가격±1.50
- 5년국채선물 : 기준가격±4.50

2) 옵션거래

- 가격제한폭 없음. 다만 주문실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호가한도 가격만 설정
- 호가최고한도가격 : 15%상승(하락)콜(풋)옵션이론가격
- 호가최저한도가격 : 15%하락(상승)콜(풋)옵션이론가격

10	호가의 수량제한 (규정 §70)	변경사항	유의사항
		▶ 주식상품 : 선물 999→1,000, 옵션 4999→5,000	▶ 시장조성호가는 최소 5계약 이상 한도수량의 1/10이내

호가수량단위

- 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수량단위는 1계약으로 함

호가한도수량

구분	상품명	호가한도수량
주식상품	KOSPI200선물	1,000
	KOSPI200옵션	5,000
	스타지수선물	1,000 (100)
	개별주식옵션	5,000 (500)
금리상품	3년국채선물	1,000
	5년국채선물	1,000 (100)
	CD금리선물	1,000 (100)
	통안증권금리선물	1,000 (100)

통화상품	미국달러선물	1,000
	미국달러옵션	5,000 (500)
	엔선물	1,000
	유로선물	1,000
일반상품	금선물	1,000 (100)

* ()는 시장조성종목의 호가한도수량임(일반 호가한도수량의 1/10)

11	매매체결방법 (규정 §71~§73)	변경사항	유의사항
		▶ 금리·통화·일반상품 - 종가단일가, 단일가배분원칙 적용 - 시장가호가와 지정가호가간 체결원칙 삭제	▶ 최종거래일 통화·일반상품 : 종가단일가

1)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규정 §72)

적용시기

- 시가/종가결정시, 거래의 중단/정지후 재개시의 최초가격 결정 시 및 주식관련상품의 정리매매종목이 기초주권인 선물 또는 옵션거래

매매체결방식

-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같게 되는 가격(합치가격)을 약정가격으로 함
 - 합치가격보다 낮은 매도호가의 모든 수량 및 합치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의 모든 수량
 - 합치가격의 호가의 경우
 -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 중 어느 일방 호가의 모든 수량

- 타방호가가 있는 경우 타방호가의 거래수량 단위의 수량

※ 합치가격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직전가격(없는 경우 기준가격)으로 하고 직전가격이 없는 경우는 직전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함

□ 상·하한가로 제출된 단일가호가간의 우선순위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약정가격이 상한가(호가최고한도가격)·하한가(호가최저한도가격)로 결정되는 경우에 상·하한가로 제출된 단일가호가간에는 큰 수량의 호가가 적은 수량의 호가에 우선하고, 수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하여 9단계 배분

배분단계	단계별 배분수량	
	선물	옵션
1단계	1계약	5계약
2단계	5계약	25계약
3단계	10계약	50계약
4단계	20계약	100계약
5단계	50계약	250계약
6단계	100계약	500계약
7단계	200계약	1,000계약
8단계	잔량의 1/2	
9단계	잔량	

2)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규정 §73)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외의 경우에 적용 및 가격·시간우선원칙 적용
- 가장 높은 매수호가 가격이 가장 낮은 매도호가 가격 이상인 경우 먼저 접수된 호가가격을 약정가격으로 함

12	협의대량거래 (규정 §74)	변경사항 ▶ 장개시후 10분부터 종가단일가 호가접수개시전 10분까지	유의사항 ▶ 주식상품 적용제외
----	----------------------------	---	----------------------------

□ 개별경쟁거래의 예외로 협의대량거래 허용(규정 §74)

- 종목, 가격 및 수량에 대하여 당사간에 협의된 거래의 체결을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체결시킴
 - 대상상품 : 3년국채선물, 미국달러선물, 유로선물 및 엔선물

□ 협의대량거래 시간 및 가격범위

- 장개시 후 10분부터 종가단일가 호가접수개시 전 10분까지

< 협의 대량거래시간 >

구분	평일	최종거래일
3년국채선물		09:10 ~ 11:20
미국달러선물, 유로선물 및 엔선물	09:10 ~ 14:55	09:10 ~ 11:10

주) 3년국채(현금결제)는 최종거래일에 접속으로 장종료 및 미국달러선물등 통화선물(실물인수도)은 단일가로 장 종료

- 협의가격

- 3년국채선물 : 협의완료시각 직전 10분간의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범위내에서 가능
- 미국달러·유로·엔선물 : 종목별기준가격 ± 종목별기준가격 * 5/1000

<기준가격>

- ▶ 기준종목(직전거래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 : 직전체결가격
- ▶ 기타종목 : 기준종목의 직전체결가격 +(기타종목과 기준종목의 전일 정산가격의 차)

- 거래가능수량

- 최대 : 3,000계약
- 최소 : 통화상품 200계약, 3년국채선물 500계약

- 협의완료후 10분 이내에 거래소에 신청(경과시 거부 처리)

13	거래의 중단 (규정 §75)	변경사항 -	유의사항 -
----	----------------------------	-----------	-----------

가. 임의적 중단(규정 §75)

- 거래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종목의 거래를 중단 또는 정지할 수 있음
1. 거래소선물·옵션시스템 또는 회원선물·옵션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2. 주식시장의 시스템의 장애가 10분 이상 발생하여 주가지수의 구성종목중 일정종목 수(코스피200:100종목, 스타지수:15종목)이상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3. 주식옵션거래에 있어서 기초주권의 매매거래의 중단·정지의 경우
 4. 선물스프레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를 구성하는 선물거래의 2개 종목중에서 거래가 중단된 종목이 있는 경우

나.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필요적 중단(규정 §76)

- 거래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동일한 모든 종목의 주가지수선물거래를 중단
1. 주가지수선물거래의 약정가격의 급변
 - 전일의 약정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약정가격이 기준가격보다 1분 이상 지속하여 기준가격에 한국주가지수 200 선물거래의 경우 100분의 5, 스타지수 선물거래의 경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 이상 높(낮)고, 선물중단이론가격보다 1분 이상 지속하여 선물중단이론가격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 이상 높(낮)은 경우

⇒ 중단 후 5분 경과시 재개

2. 주식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 한국종합주가지수 또는 코스닥종합주가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어 주식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경우(서킷브레이커 : Circuit Breaker)

⇒ 중단 후 20분 경과시 재개

다. 주가지수선물스프레드 및 주식상품옵션거래의 필요적 중단(규정 §77)

- 주가지수선물거래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모든 종목의 선물스프레드거래 및 옵션거래를 중단

⇒ 선물거래의 재개시 거래 재개

- 주식시장의 매매거래가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에 의하여 중단되는 때에는 대상이 모든 종목의 주식관련 상품의 거래를 중단함

⇒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재개시 거래 재개

14	착오거래의 정정 (규정 §80)	변경사항	유의사항
		▶ 금리·통화·일반상품 : 수탁계 좌간 정정 폐지	-

□ 착오거래의 정정방법

- 착오거래의 정정방법은 종목, 수량, 가격 및 매도·매수 등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게 하며, 위탁거래와 자기거래의 구분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그 구분에 부합되도록 정정
 - 착오거래 정정시한은 거래종료 후 1시간 이내이며 이 경우 회원은 신청서와 사유서 또는 증빙서류를 자체없이 거래소에 제출

15	시세 등의 공표방법 (규정 §81)	변경사항 -	유의사항 ▶ 금리·통화·일반상품 : 시가개시 1분전부터 정정·취소 불가
----	-------------------------------	-----------	---

19. 시세 등의 공표방법

□ 시세공표 내용

- 현재 · 최초 · 최고 · 최저 및 최종의 약정가격
- 약정수량 및 약정금액
- 매도 · 매수별 연속 5개 우선가격(tick 기준)의 호가수량
- 미결제약정수량
- 단일가호가의 접수시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수량 또는 가격
 - 주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매도 · 매수별 총호가수량
 -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예상체결가격
- 직전 거래일의 최종의 약정가격 또는 기준가격

□ 단일가호가 접수시간중 예상체결가격 공개 여부

구분		금리상품, 통화상품, 일반상품(금선물)	주식상품
시가	예상체결가격 공개여부	공개	미공개
	공표내용	○ 예상체결가격 실시간공개 * 시가개시 1분전부터 시가단일가체결시까지는 정정 및 취소불가	매도·매수별 총호가건수 및 총호가수량
종가	예상체결가격 공개여부	미공개	
	공표내용	매도·매수별 총호가건수 및 총호가수량	

16	시장조성자 제도 (규정 §82)	변경사항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월물 원칙이나 최종거래일요일과 동일한 전주의 요일부터는 차근월물로 함 ▶ 충족조건호가 불허

□ 시장조성 종목 및 기간(규정 §82)

- 적용상품 : 신상품 및 유동성 관리상품
- 상품별 적용종목
 - 선물 및 옵션 모두 최근월물에만 적용하되, 최종거래일에 해당하는 요일과 동일한 전주의 요일(휴장일인 경우 순연)부터는 차근월물로 함
 - 다만, 일반상품선물거래는 결제월을 제한하지 않고 1개 이상의 결제월로 함
 - 옵션거래의 경우 선물거래와 동일한 결제월에 속하는 등가격(ATM) 1개와 등가격에 연속하는 2개의 내가격(ITM) 및 외가격(OTM)의 5개로 함
- 시장조성기간
 - 24개월이며 유동성관리품목인 경우에는 상장폐지예고지정일의 전일까지임
 - 상장일이 분기의 첫째 월에 속하는 때에는 분기의 잔존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둘째 및 셋째 월에 속하는 때에는 그 분기의 잔존기간에 다음 분기를 더한 기간으로 함

□ 시장조성계약의 체결(규정 §83)

- 시장조성계약기간은 분기단위로 하며, 분기 종료 7거래일 전까지 시장조성자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다음 분기까지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

□ 시장조성계좌 개설

- 시장조성계약 체결후 실제 시장조성을 하기 전에 시장조성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시장조성계좌의 개설·변경 또는 폐쇄하는 때에는 시행일의 7거래일 전에 선물·옵션시스템 입력 또는 문서로 거래소에 신고

□ 시장조성호가의 제출간격(규정 §84)

- 호가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최우선호가 간격의 수준
 - 최우선 매도호가(매도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한가에서 호가가격 단위를 뺀 가격)와 최우선 매수호가(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하한가에 호가가격단위를 더한 가격)의 간격수준이
 - ▶ 선물거래의 경우 호가가격단위의 10배,
 - ▶ 옵션거래의 경우 호가가격단위의 10배에 상당하는 수준인 최우선매수호가가격의 100분의 15(국채선물옵션의 경우 100분의 25)인 경우
- 호가제출 의무발생시점부터 5분 이내에 쌍방 또는 일방호가 제출

< 코스피 200 선물의 예 >

매도수량	가격	매수수량	비고
기제출 최우선매도호가 → 10	100.10		
↑ 1틱	100.05		
2틱	100.00		
①⇨10	99.95		
4틱	99.90		
10틱	99.85		
6틱	99.80		
7틱	99.75		
8틱	99.70	10①	상방호가 ①·①제출로 간격축소 11틱 → 5틱 간격축소
9틱	99.65	15②	← 일방호가 ②제출로 간격축소 11틱 → 9틱
↓ 10틱	99.60		*
	99.55	10	99.60P(100.10P-10× 0.05P) ← 기제출 최우선매수호가

- 가격연속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의무호가 제출
 - 호가제출의무 발생시점의 최우선호가 간격에 직전의 약정가격(직전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이 포함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되는 최우선호가 간격에도 직전의 약정가격이 포함되어야 함

□ 시장조성호가의 제출방법(규정 제85조)

-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제출
- 지정가호가로 제출(호가 조건(FOK or IOC) 미허용)
- 접속매매시간에 제출

- 다만, 개별주식관련상품의 경우 현물시장의 Random End기간 및 필요적 중단에 의한 최초 단일가 결정후 20분간은 제외

- 의무호가는 호가당 5계약 이상으로 제출

- 호가의 별도 구분

- 자기거래호가와 구분하여 별도의 코드(6)로 입력하고, 시장조성호가와 권리호가를 구분하여 별도 코드(7)로 입력

□ 호가제출의무의 면제

- 접속거래시간중 다음의 경우(자발적인 제출은 가능)

- 직전 약정가격이 상하한가 등인 경우

- 상한가 등(하한가 등)에 매수(매도)의 호가 있는 경우(의무 부과 시 시장조성자는 과도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

- 장중 단일가 결정후 20분간(시황의 판단기간 부여)

- 주식시장의 Random end로 단일가호가시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시간(선물시장은 접속거래시간으로 중요한 투자판단요소인 주식 현물가격 미결정 → 주식관련상품에만 적용)

- 주식시장의 단일가 미결정으로 단일가호가시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시간(선물시장은 접속거래시간으로 중요한 투자판단요소인 주식현물가격 미결정 → 주식관련상품에만 적용)

□ 시장조성계좌를 통한 의무호가 이외의 제출가능호가(권리호가)

-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 이상의 매수의 지정가호가 또는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이하의 매도의 지정가호가(체결가능 지정가호가)

-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 이상의 매도의 지정가호가 또는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이하의 매수의 지정가호가(시장폭 확대 및 시장심도 심화의 지정가호가)
- * 시장조성자인 甲 회원이 A 주식선물의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장조성종목은 3월물이더라도 시장조성계좌로 3월·6월·9월 및 12월의 모든 결제월에 대해 자발적으로 권리호가 제출 가능

<코스피200 선물을 가정한 예>

매도수량	가격	매수수량
25 20 15	100.2 100.2 100.1	
25, 20, 15, ↑ 시장폭확대 매도호가	10 ↑ 기제출최우선 매도호가	10 ↑ 기제출 최우선매수호가 ↓ 시장폭확대 매수호가 ↓ 15, 20, 25
	10 ↑ 10 ↓ 99.60	10 ↓ 15, 20, 25
	99.80 35 40	5) 시장심도심화 매수호가
	99.75	

□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 등(규정 §86)

- 주식관련상품에 대한 거래증거금의 감경(80%수준)
- 해당 종목의 거래수수료의 일부 지급

17	유동성 관리상품 등 지정 (규정 §82)	변경사항	유의사항
		-	-

가. 유동성 관리 품목

① 「유동성 관리 품목」의 지정 기준

- 매월 최초 거래일의 직전 3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아래의 유동성 관리 기준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

구분		유동성 관리 품목 지정 기준 (일평균 거래량, 계약)
주식 상품	KOSPI200 선물 · 옵션	300계약
	스타지수 선물	
	개별 주식 옵션	50계약(기초 주권 별)
금리 상품	3년 국채 선물 · 옵션	200계약
	5년 국채 선물	
	CD 금리 선물	
	통안증권 금리 선물	
통화 상품	미국 달러 선물 · 옵션	100계약
	엔 선물	
	유로 선물	
일반 상품	금 선물	50계약

- 다만, 상장일이 속한 월의 익월 초일(상장일이 월의 초일인 경우 당월 초일)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품목에 한하여 지정

- 거래소는 유동성 관리 품목 지정 사실을 기준 해당일의 익일(매월의 최초 거래일)에 자체 없이 공표

② 「유동성 관리 품목」에 대한 유동성 진작 노력

- 거래소는 유동성관리품목 지정 후 유동성관리기간(지정일로부터 18개월 이내) 동안 그 품목의 거래부진원인 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해소하는 등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

③ 「유동성관리품목」의 지정제외

- 유동성관리품목 지정후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유동성관리기간 동안 매월 최초거래일의 직전 3개월간 일평균약정수량이 3회 연속 유동성관리기준수량 이상으로 되는 경우 지정제외
- 유동성관리기간 종료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약정수량이 유동성관리기준수량의 1/3 이상인 경우로서 유동성관리기간 종료 직후 3개월간 일평균거래량이 유동성관리기준수량 이상으로 되는 경우 지정제외
- 유동성관리품목이 상장폐지예고품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 거래소는 유동성관리품목 지정제외 사실을 해당일의 익일(매월의 최초거래일)에 자체없이 공표

2) 「상장폐지예고품목」 지정

- 유동성관리기간 동안의 거래부진원인 해소 및 유동성 진작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진이 지속되어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상장폐지예고품목으로 지정
 - ① 유동성관리기간 종료 직전 3개월간 일평균거래량이 유동성관리기준수량의 1/3에 미달하는 품목
 - ② 유동성관리기간 종료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약정수량이 유동성

관리기준수량의 1/3 이상인 경우로서 유동성관리기간 종료 직후
3개월간 일평균거래량이 유동성관리기준수량에 미달하는 품목

- 다만, 동종 또는 유사 품목의 상장 여부, 재상장 가능성 여부,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상장폐지예고품목의 지정을 유예할 수 있음
 - 거래소는 상장폐지예고품목 지정 사실 등을 해당일의 익일(매월의 최초거래일)에 지체없이 공표
- ⇒ 상장폐지예고품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동 품목은 선물시장위원회의 결의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1) 선물시장의 경우 현행 유지

구분	이론가	r
통화 선물	$F = S \times \frac{(1+r \times \frac{t}{365})}{(1+r_f \times \frac{t}{365})}$	한국자금증개인(A)과 고시하는 15시 현재의 1일물 평균금리(A), 한국자금증개인(C)가 고시하는 15시 현재의 만기 365일(C) 이종통화스왑금리(CRS, 매수호가(Bid)와 매도호가(Offer)의 평균금리를 보간(Interpolation)하여 산출
CD 선물	$F = 100 - r, \quad r = \left[\frac{(1+r_T \times \frac{T}{365})}{(1+r_t \times \frac{t}{365})} - 1 \right] \times \frac{365}{91}$	A, B
MSB 선물	$F = 100 - r$ $r = \left[\frac{(1+r_T)(1+r_T \times \frac{(T-365)}{365})}{(1+r_t \times \frac{t}{365})} - 1 \right] \times \frac{365}{364}$	만기 364일 통안증권의 연수익률(D) KIS체권평가(주)와 한국체권평가(주)가 제공하는 만기 2년 통안증권의 연수익률의 평균수익률(E)을 보간(interpolation)하여 산출된 금리
금선물	$F = S \times (1 + r \times t) + I$	
국채 선물	$F = \sum_{i=1}^6 \frac{8/2}{(1+r/2)^i} + \frac{100}{(1+r/2)^6}$	최종결제기준체권의 평균선도수익률
주식 관련 선물	$F = S \times (1 + r \times \frac{t}{365}) - d$ $d = \frac{\text{현금배당금총액}}{\text{기준시가총액}} \times (1 + r \times \frac{t_d}{365}) \times 100 (\text{스티치수의 경우 } 1,000)$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11시30분 현재의 만기 91일 CD연수익률

※ 기타 변수는 상품마다 제각각 다름

□ 통화선물(r_f)

- 미국달러선물 : 영국은행협회(BBA)에서 발표하는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만기 런던은행간 매도금리(LIBOR)를 보간(Interpolation)하여 산출된 금리
- 엔선물 : 일본은행협회(JBA)에서 11시 기준으로 발표하는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만기 동경은행간 매도금리(TIBOR)를 보간(Interpolation)하여 산출된 금리
- 유로선물 - 유럽은행협회(EBF)에서 중앙유럽시간 11시 기준으로

발표하는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만기 유럽은행간 매도금리(EURIBOR)를 보간(Interpolation)하여 산출된 금리

□ CD선물

- t : 산출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의 산출잔존기간의 일수,
- $T = t+91$,
- r_T : 산출일부터 T 일 까지의 만기수익율
- r_t : 산출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의 만기수익율

□ 금선물

- S : 거래시간 종료시점에서 국제금시장의 매수주문가격과 매도주문가격의 평균 수치를 1 그램당 가격으로 환산한 수치에서
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미국달러 현물환거래에서 형성된 최종환율을 곱한 수치
- I : 증권예탁원 기준에 의한 g당 보관료

□ 국채선물

- 개별기준채권의 시장가격 계산
최종결제기준채권에 속하는 개별채권(이하 “개별기준채권”이라함)
의 시장가격은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15시30분 현재 수익률
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text{시장가격} = \frac{1}{\left[1 + \frac{r_1}{2} \times \frac{d_1}{t_1} \right]} \times \left[\sum_{i=0}^{n-1} \frac{\frac{c}{2}}{\left(1 + \frac{r_1}{2} \right)^i} + \frac{100}{\left(1 + \frac{r_1}{2} \right)^{n-1}} \right] \rightarrow \text{산식(1)}$$

r_1 : 개별기준채권의 유통수익률

d_1 : 산출일부터 차기 이자지급일까지의 일수

t_1 :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차기 이자지급일까지의 일수

n : 잔여 이자지급회수

c : 개별기준채권의 표면금리 × 100

○ 개별기준채권의 선도가격 계산

$$\text{선도가격} = (S - I) \times (1 + r^* \times \frac{t}{365})$$

S : 개별기준채권의 시장가격

$$I : \text{이자락금액의 현재가치} = \frac{6개월간의 이자지급액}{(1 + r_2 \times \frac{d_2}{365})}$$

r_2 : 이자락금액에 대한 할인율(CD금리선물과 동일하게 적용)

d_2 : 산출일부터 차기 이자지급일까지의 일수

r^* : 산출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의 적용금리(CD금리선물과 동일하게 적용)

t : 산출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의 산출잔존기간의 일수

○ 개별기준채권의 선도수익률 계산

개별기준채권의 시장가격 계산을 적용하여 개별기준채권의 선도가격과 일치하는 선도수익률을 산출함.

○ 최종결제기준채권의 평균선도수익률 계산

개별기준채권의 선도수익률을 단순평균한 후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산출함.

□ 주식관련 선물

- 선물배당액지수 = $\frac{\text{현금배당금총액}}{\text{기준시가총액}} \times (1 + \text{금리} \times \frac{\text{배당락잔존기간의 일수}}{365}) \times 100$
(스타지수의 경우 1,000)
- S : 전일(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의 현물종가
- “산출잔존기간”이라 함은 산출일부터 기산하여 최종거래일까지
- “기준시가총액”이라 함은 전일의 대상자산의 기준시가총액
- “현금배당금총액”이라 함은 대생자산의 구성종목중 산출잔존기간 이내의 동일한 날에 배당락되는 종목의 각 발행회사가 직전사업년도에 배당한 현금배당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현금배당금이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발행회사의 경우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산출하는 금액

- “배당락잔존기간”이라 함은 산출잔존기간 이내의 배당락일부터 기산하여 최종거래일까지

3) 옵션시장의 경우 : 현행 유지

구분	이론가	이자율	변동성
달러 옵션	$C = S \cdot e^{-r_f \cdot t} \cdot N(d_1) - X \cdot e^{-r \cdot t} \cdot N(d_2)$ $P = X \cdot e^{-r \cdot t} \cdot N(-d_2) - S \cdot e^{-r_f \cdot t} \cdot N(-d_1)$ $d_1 = \frac{\ln(S/X) + (r - r_f + \sigma^2/2) \cdot t}{\sigma \sqrt{t}}$ $d_2 = d_1 - \sigma \sqrt{t}$	한국증권업 협회 11시 30 분 91일 CD연수익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가 있는 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종목의 내재변동성 ○ 거래가 없는 종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종목 - 최근월물과 차근월물을 대상으로 거래량 가중치와 행사가격과 주가와의 거리를 가중치로 하여 산출
지수 옵션	$C = e^{(-r \times \frac{t}{365})} \times \sum_{k=0}^{49} \frac{49!}{(49-k)! \times k!} \times up^k \times down^{(49-k)} \times C_X$ $P = e^{(-r \times \frac{t}{365})} \times \sum_{k=0}^{49} \frac{49!}{(49-k)! \times k!} \times up^k \times down^{(49-k)} \times P_X$		
주식 옵션	**		

- 매도 매수별 이론가격 차등 적용을 사용하고 있는 달러옵션의 이론 가격을 코스피처럼 종목별로 일원화
- 변동성 산출시 이용되는 방법 역시 코스피 상품의 변동성 산출방식으로 변경
- 적용금리 역시 한국증권업협회 11시 30분 91일 CD연수익률로 통일

□ 달러옵션

- C : 콜옵션가격
- P : 풋옵션가격
- S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미국달러 현물환 거래에서 형성된 최종환율

- σ : 미국달러옵션의 시장변동성
- X : 행사가격
- r :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11시30분 현재의 만기 91일 양도성정기예금증서의 연수익률
- r_f : 영국은행협회(BBA)에서 발표하는 3개월 만기 런던은행간 매도금리(LIBOR)
- t : 산출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의 산출잔존기간의 일수 / 365
- \ln : 자연로그함수
- e : 지수함수
- $N(d)$: 누적표준정규분포함수

□ 주식관련 옵션 이론가격

- $up = \frac{e^{(r \times \frac{t}{365} \times \frac{1}{49})}}{up ratio - down ratio}$, $down = 1 - up$
- $P_X = X - (S - D) \times up ratio^k \times down ratio^{(49-k)} > 0$
- $C_X = (S - D) \times up ratio^k \times down ratio^{(49-k)} - X > 0$
- $D = \frac{\text{현금배당금총액}}{\text{기준시가총액}} \times 100 \times e^{(-r \times \frac{t_d}{365})}$
- $up ratio = e^{\sigma \times \sqrt{\frac{t}{365} \times \frac{1}{49}}}$, $down ratio = e^{-\sigma \times \sqrt{\frac{t}{365} \times \frac{1}{49}}}$
- “금리”라 함은 한국증권업협회가 산출하는 만기가 91일인 양도성예금증서의 전일의 오전의 연 수익률
- “산출잔존기간”이라 함은 산출일부터 기산하여 최종거래일
- “최종주가지수”라 함은 산출일의 전일 대상자산 종가
- “주가지수상승률” 및 “주가지수하락률”이라 함은 각각 대상자산의 상승률 및 하락률
- “기준시가총액”이라 함은 전일(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의 한국주가지수 200의 기준시가총액
- “현금배당금총액”이라 함은 한국주가지수 200의 구성종목중 산출잔존기간 이내의 동일한 날에 배당락되는 종목의 각 발행회사가 직전사업년도에 배당한 현금배당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현금배당금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발행회사의 경우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산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 “배당잔존기간”이라 함은 산출일부터 기산하여 산출잔존기간 이내의 배당락

일의 전일

< 평균 내재변동성 산출방식 >

□ 적용범위

- 모든 옵션종목의 평균내재변동성 산출에 적용
- 신규 결제월종목, 추가설정, 특별설정, 거래가 없는 종목

※ 거래가 있는 종목은 해당 종목의 연내재변동성을 사용(현행과 동일)

□ 평균내재변동성 대상 결제월종목 선정 기준

- 최근월물과 차근월물

※ 단, 최종거래일의 경우 차근월물과 차차근월물

□ 평균내재변동성의 거래량 가중치와 주가와의 거리 가중치 고려

- 행사가격대별 가중치(Distance Weighting Factor, DWF)와 거래량 가중치(Volume Weighting Factor, VWF)를 계산하여 합산
- DWF는 ATM 근처 종목일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주고, OTM 종목일수록 더 낮은 가중치를 주도록 하는 방식임

※ 가중치가 선형적이지 않음

【 종목별 DWF와 VWF 계산 방식 】

종목별 DWF	종목별 VWF
<ul style="list-style-type: none">• $x = \text{ABS}(\text{주식가격} - \text{행사가격}) / \text{주식가격}$ → 주식가격과 행사가격의 거리 비율(%)• a → DWF를 부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비율(%)• 만약 $x \leq a$ 이면, $\text{DWF} = \frac{(x-a)^2}{a^2}$• 만약 $x > a$, $\text{DWF} =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일 옵션 개별 종목당 거래량을 DWF a이내 총거래량으로 나누어서 산출함

* 코스피200옵션, 주식옵션의 경우 a 는 5%, 미국달러옵션의 경우 1.5%로 함

$$\circ \text{ 평균내재변동성} = \frac{\sum\{IV \times VWF \times DWF\}}{\sum\{VWF \times DWF\}}$$